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0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면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이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원원칙 및 지원방향 등을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이라 함은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2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

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립, 포장 등의 추가적·부가가치적 업무

제14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전담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주요 지원실적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을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전용”을 “경영참여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시책”을 “무역조정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각각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계획의”를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로,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을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상황”으로, “3개월”을 “12개월”로 한다.

1.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상황

제23조제1호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5.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8.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9.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1. 제12조제7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2. 제12조제7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3. 제12조제7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4. 법 제14조제8항 및 제12조제8항에 따른 추가 지원
- 별표 2 제2호가목, 가목1), 가목2), 가목3), 가목4)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4.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본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u> <u>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u> <u>시행령</u>	<u>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4조의3(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	제1조(목적)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제2조(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제4조의3(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생략)

제10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요건 등) ①·② (생략)

③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이라 함은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④·⑤ (생략)

<신설>

----. ----- 사업자등록증명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1. ---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

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
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려면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
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
조약국내대책위원회(이하 “통
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통상조약국내대책위
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
우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
원원칙 및 지원방향 등을 「대
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
행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
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
신청서에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
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피해 산정기간과 매출액·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7조부

<신 설>

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이라 함은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2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

<신 설>

<신 설>

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생산하
는 상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립, 포장 등의 추가적·부가
가치적 업무

제14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
정 절차)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피해지
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
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
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상피
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
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

용노동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주요 지원실적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① 삭 제 ② (생 략)	제20조(무역조정지원기업 및 통상 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보고명령)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명령) ①----- ----- --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 -----.
1. 무역조정지원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	1.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 피해지원기업의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 상황
2.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이행 및 성과	2. ----- 경영참여형 --- ----- --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 무역조정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시책-----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	②----- -----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
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
된 사업의 이행상황

2.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자지
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무역조정
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
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이행상
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
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
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역
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

1.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
상피해지원근로자-----

2. -----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
근로자 --

③-----
----- 무역조정지원기업 또
는 통상피해지원기업-----
----- 무역조정
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
상피해대응계획 이행상황-----
----- 12개월 -----
-----.

제23조(권한의 위임) -----

-----.

1. ----- 무역
조정지원근로자 또는 법 제15
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
담

3. 법 제13조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 9. (생략)
제24조(업무의 위탁) (생략)

<신설>

근로자---

2. 법 제12조제1항(제15조제3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3. 법 제13조(제15조제3항에 따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4. ~ 9.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
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
피해대응에 필요한 경영·회
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
피해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
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
피해대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5.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
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
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
원
7.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고용
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8.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무역
조정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9.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
고사항의 접수
11. 제12조제7항에 따른 출자지
원 신청의 접수
12. 제12조제7항에 따른 투자계
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
보
13. 제12조제7항에 따른 회계연
도 결산서의 접수
14. 법 제14조제8항 및 제12조
제8항에 따른 추가 지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4119